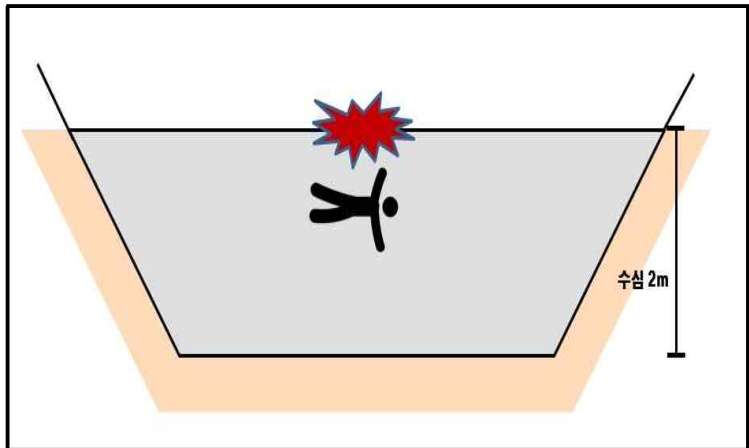


워터해저드 표면에 결빙되어있던 얼음이 깨지면서 근로자 익사 (중부본부 2018-21-51-001)

재해개요

2018년 2월 22일(목) 07시 40분경 ○○○ 골프장에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가 결빙되어 있던 워터해저드(연못, 수심2M) 안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됨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 원인

○ 위험장소 출입(근무지 이탈)

- 야간의 당직 본업무외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워터해저드(연못) 출입금지장소에서 비정상적인 행동(근무목적 외 행동 : 골프공 수거 등)을 실시

○ 야간 당직자 관리감독 소홀

- 방재실 2인 이상 근무 또는 방재실과 경비실간 상호 연락과 확인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

○ 야간 골프카트 관리 부실

- 야간에 골프카트 운행 시 골프장의 굴곡적인 지형 특성과 조명등의 미설치로 전복위험이 있음에도 시동키가 꽂혀 있는 등 운행 가능하도록 방치

재해예방대책

○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

- 야간당직자는 지정된 장소만 출입 하도록 하고, 위험장소인 워터해저드(연못)에는 출입 하지 못하도록 “출입금지” 표지 설치

○ 야간 당직자 관리감독 강화

- 해당 사업장의 경우 재해발생일에 야간 당직자는 경비 1명, 방재실 1명으로 근무하였음. 방재실 비상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방재실 근무자를 2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거나 경비실과 방재실 근무상황을 상호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
- 야간 당직자에게 근무목적 외 행동금지 교육 실시

○ 야간 골프카트 관리 철저

- 해당 골프장의 골프카트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운행이 불가함.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동키가 야간에도 항상 꽂혀 있어 야간운행이 가능함. 따라서 야간에는 골프카트 시동키를 수거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